

07_전문가 없이 해결! 셀프 상표등록 노하우

#1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이란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상표권은 이 상표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능력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게 해줍니다. 먼저, 「상표법」상 '상표'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2

※ 상표란?

※ 「상표법」 제2조 제1항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많이 팔리는 것입니다.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자사의 상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품의 외관이 동일한 제품이 있다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알릴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은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상표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3

※ 표장이란?

※ 「상표법」 제2조 제1항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는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표의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은 모두 상표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상품의 출처를 명시하고 식별하는 상표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어 상품을 독특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표법」 제2조

-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최근에는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도 허용되고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소리나 냄새로 표현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리나 냄새를 통해 상품을 식별하고 구별하는 경우에도 이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오픈마켓이나 네이버쇼핑과 같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상세 페이지 등에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명확하게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출처와 특징을 알리고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에서의 상표 사용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표의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 상표등록의 이해

창업을 한다면 회사 이름, 제품 아이템, 상품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미 정해놓은 상품명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등록을 통해 상품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등록은 현재 당장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것으로 예정된 것만 증명되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정된 상품명이나 로고 등을 상표로 등록하여 상표권을 보호하면,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상품명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상품이나 포장지 등을 다시 수정하는 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창업 시 상표등

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6

※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 사용을 예정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상표 사용 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등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상표 사용을 무작정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표 등록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출원을 미루게 되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 충돌이 발생하고, 상표권을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7

※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상호	상표
등록 방법	사업자등록신고	상표등록출원
기관	관할세무서	특허청
형식	문자	문자, 기호, 도형 등
지역적 범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 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전 범위
시기적 범위	존속기간 없음 (폐업 시까지)	반영구적 (10년마다 갱신 가능)

#8

※ 상표권 행사의 결과

상표권은 특정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고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인 명칭들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컴퓨터', '햄버거'와 같은 명칭은 일반적인 상품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명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칭을 독점적으로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표등록은 특정 상표를 사용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명칭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9

※ 독점 예외 상표

따라서, 이미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나 부르고 있는 경우,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누군가에 의해 등록되어 독점되고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해당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해당 상표를 선점한 것 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0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상표로 등록받지 못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로 등록이 되지 않은 등록 불가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1

※ 상표로 등록받지 못하는 요건 - 보통명칭

※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보통명칭은 실제로 거래 계약에서 사용되는 상품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명칭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명칭을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명칭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2

※ 상표로 등록받지 못하는 요건 - 관용표장

※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관용표장은 동종업자 사이에서 상품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명칭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관용표장은 판매자나 업계 내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말합니다. 이는 외식업과 같이 특정 업종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용표장은 업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동종업자 사이에서 특정 상품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13

※ 상표로 등록받지 못하는 요건 - 성질표장

※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產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성질표장은 상품의 특징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이나 용어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질표장은 상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구분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독점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공정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질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14

※ 영문 2글자로 이루어진 ‘흔한 표장’의 등록 여부

"LG"나 "SK"와 같이 영문 2글자로 이루어진 상표는 일반적으로 흔한 표장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표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으로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LG"와 같은 상표는 이 회사의 제품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표를 통해 해당 회사의 제품을 신뢰하고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LG"와 같은 상표를 처음 사용한 회사가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LG가 상표등록을 받은 것도 회사의 역사를 고려하면 상당히 최근의 일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흔한 표장으로 분류되는 영문 2글자 상표도 그 상표와 연관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5

※ 동일, 유사 상표의 등록 여부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에서는 이미 출원되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도 등록시켜주지 않는데, 이는 시장에서 유사한 상표들이 함께 사용되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표의 공정한 보호와 소비자의 이해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표는 기업이나 제품을 식별하고 구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상표나 유사한 상표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경쟁 환경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6

※ 선출원 상표의 등록

※ 「상표법」 제35조(선출원)

①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 여부를 즉시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출원일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우선심사 출원일 경우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등록된 선등록상표 이외에도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선출원 제도의 일환입니다.

#17

※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10년씩 연장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8

※ 상표권의 침해 판단 범위

「상표법」은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상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상표를 믿고 구매하는 등의 거래행위를 하는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일한 상표만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혼동되거나 속을 수 있는 상표 사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